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박춘선 의원 외 41명
- 나. 의안번호: 제755호
- 다. 발의일자: 2023. 5. 29.
- 라. 회부일자: 2023. 6. 5.

2. 제 안 사 유

-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춰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하고,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·관리함으로써 우수한 환경교육 제공 및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하며,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을 의무화하여 기후위기·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사회 실천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또한 환경교육 정의 및 환경교육센터 명칭·역할 등을 「환경교육법」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법적 완결성·동일성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함
- 나. 시장·구청장·사업자 등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.
- 다.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~제5조).
- 라. 환경교육 자문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.
- 마.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.
- 바.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.
- 사. 사업자와 공무원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~제10조).
- 아. 사회환경교육기관과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1조~제12조).
- 자. 환경교육 위탁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3조~제14조)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제명을 변경하고,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·관리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하며,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을 의무화하여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<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>

조항	내 용
제명	· 상위법령에 맞춰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안 제3조	· 시장·구청장·사업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
안 제4조~제5조	·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안 제7조	·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안 제8조	·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
안 제9조~제10조	· 사업자 및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
안 제11조~제12조	·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
안 제13조~제14조	· 환경교육 위탁 및 재정 지원

나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명은 상위법인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환경교육법」”)에 맞추어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.
- 안 제2조(정의)는 ‘학교환경교육’ 대상을 「환경교육법」에 맞게 다시 정의한 것이고, 안 제7조(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)는 대상에서 제외된 「영유아보육법」 상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한 것임.

즉, 「환경교육법」에서 ‘학교환경교육’은 「유아교육법」 상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과 「고등교육법」 상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, 이를 제외한 환경교육은

전부 사회환경교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

안 제2조에서 「영유아보육법」 상 어린이집을 ‘학교환경교육’ 대상에서 제외 하되, 안 제7조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,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- 안 제4조는 환경교육계획의 내용에 환경교육 현황, 환경교육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환경교육계획 이행평가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사전분석과 성과 점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,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.
- 안 제8조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대상에 종교 단체를 추가하여 환경교육 저변을 확대하려는 것이고, 안 제10조는 연 1회 이상 공무원에 대한 환경 교육을 시행하여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.
- 안 제11조는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. 현재 서울시 내 학교와 공공기관 등 수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환경교육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할 뿐 아니라, 교육의 수준 또한 높지 않은 실정이므로,

조례 개정을 통해 우수한 환경교육 제공 및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<서울시 환경교육 관련 민간기관 및 전문가 현황>

구분	내용
민간기관	· 총 368개 단체(민간단체 282개, 기업 및 협동조합 86개)
환경교육사	· 총 233명(2급 26명, 3급 207명/1급 없음)

※ 환경교육사: 환경교육 전문가로 '15년부터 운영되던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'22년 환경교육법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사를 국가전문 자격제도로 개편됨

<본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, 제11조>

<p>안 제10조(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)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환경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p>
<p>안 제11조(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시행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,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.</p>

-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지역환경교육센터¹⁾ 중 시장에게 지정 권한이 없는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의 권한 범위에 맞게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<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기능>

구분	지역환경교육센터	
	광역	기초
위상	광역단위 환경교육 거점기관	기초단위 환경교육 거점기관
운영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 환경교육 기반 구축 · 국가 및 기초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반영한 환경인식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· 환경교육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사각 지대 없는 촘촘한 환경교육 추진
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환경교육 정책 수립 관련 연구 및 조사 · 광역단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 ·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 관리지원 · 국가센터와 기초센터와의 연계·협력지원 · 광역단위의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할지역 내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 ·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 · 환경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·제공 (지역환경교육 현황조사 등) · 기초 단위의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

- 이외에도 안 제1조, 제3조, 제6조 및 제9조 등은 상위법령 규정과 같게 문구를 통일하거나 문맥을 정비하려는 것이며, 이에 대한 이견 없음.

1) 지역환경교육센터: 광역환경교육센터(시장)와 기초환경교육센터(구청장)로 구분